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75
----------	-------

제출년월일 : 2024. 1. 9.
발의자 : 현옥순 의원 등 14명

1. 제안이유

-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안 제6조)
-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 단체 등에 대한 포상(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7. 조례안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조례안 예고 : 2023. 1. 2. ~ 2023. 1. 8.

【붙임 1】 제정조례안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 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 등의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
3.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
4.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및 관련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3. 농인 등의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6)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375
------------	-------

제안년월일 : 2024년 1월 25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계획 포함 사항인 수어통역사의 포괄적 지원을 위해 조문을 수정함.

□ 주요골자

- “수어통역사 인력확대”를 “수어통역사”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4호)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수어통역사 인력확대”를 “수어통역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생 략)</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수어통역사 인력확대</u>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p> <p>5. (생 략)</p> <p>③ (생 략)</p>	<p>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p> <p>1. ~ 3. (재정안과 같음)</p> <p>4. <u>수어통역사</u> -----</p> <p>5. (재정안과 같음)</p> <p>③ (재정안과 같음)</p>